

1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 ■ 류마티스 관절염, 건강보험 적용 확대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해 2월부터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경감한다.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외래진료시 본인부담률	대상자	소요재정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30~50% → 20%	약 4만명	약 37억원

-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작년 6월부터 6세 미만,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오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환자가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이지만, 2월부터는 요양급여총비용의 20%로 줄어든다.
-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약 6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우선적으로 경감 대상에 포함된 6세 미만,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4만여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도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의 희귀난치질환을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으로 선정하여 외래 진료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하고 있으며, 올해 7월부터는 이들 질환에 대한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10%로 경감하여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더욱 낮출 예정이다.

■■■ '출산 전 진료비' 신청 우체국에서도 신청 가능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임신부들의 편의를 위해 1월 29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KB국민은행 지점 이외에 우체국에서도 출산 전 진료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창구를 확대한다.
 - ※ 신청 창구 현황: 우체국 2,743개소, KB국민은행 1,244개소, 건보공단 지사 231개소
- 모든 임신부에게 20만원씩 제공되는 출산 전 진료비의 신청은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만 가능하며,
 -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KB국민은행 지점이 없는 상당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신청을 위해 다른 지역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도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출산 전 진료비 신청 인원(1.21 현재): 263,735명
- 우체국을 통해 발급된 e-바우처도 KB국민은행에서 발급된 e-바우처와 사용방법이 동일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복지부·국토부·교과부 등 범부처간 복지서비스 통합 제공

- 보건복지가족부·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노동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중소기업청(이하 "정부")는 1월22일(목)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에서 개최된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부처합동으로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그동안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안내·상담·지원해 주는 기관이 없어 각 부처별·개별기관별로 단편적인 안내만 받음으로써 자칫 해당 기관 또는 정보를 몰라 결과적으로 조기에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One-Click으로 민생안정 지원관련 사업이 총망라된 정보제공은 물론 필요한 사이트로 연계되는 온라인 종합포탈(희망길잡이넷)을 금년 상반기 중에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복지콜센터 기능도 확대·개편하여 복합적인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로 복지부 소관 서비스(소득보장,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상담 위주였던

- 문제를 개선하여 교육(교과부), 주거(국토부), 일자리(노동부), 자영업자 생업자금지원(중소기업청) 등의 분야로까지 안내 상담 영역을 확대한다.
-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경기악화로 가게 문을 닫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으로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청의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도 융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건복지콜센터 상담만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
 - ※ 생계비: 최저생계비(133만원/4인가구)를 1~4개월 지원('09.7월부터 6개월로 연장)
 - ※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 융자: 평균 4천만원

■■■ 보건복지가족 사이버안전센터 출범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www.mw.go.kr)는 1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보건복지가족 사이버안전센터』 개소식을 갖고 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 전국 국립대병원 등 31개 기관과 연계하여 사이버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등 본격적인 보안관제 업무를 개시한다.
 -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분야중 하나인 보건복지 분야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평원 4개 기관이 38억 원을 들여 공동으로 구축한 사이버안전센터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와 소속(산하)기관, 국립대병원과 연계하여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해킹과 바이러스 등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게 되며,
 - 개인정보 상시 관리시스템을 사이버안전센터에 추가로 설치하여 복지부 주요 산하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의 각종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사례도 방지할 예정이다.
 - 또한, 내년에는 국·공립종합병원과 3차 의료기관을 추가로 연동하는 등 연동 대상기관 또한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보건복지 분야 사이버 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 사이버 안전센터 개소를 통해 그동안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정원)의 사이버 침해징후 통보에 의한 사후대응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독자적 예방중심의 사전 대응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신속한 침해유형 분석·공동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 정보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해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9년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8,069천명 선정

- 보건복지가족부는 '09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 하는 「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안을 '09년 1월 22일 입안예고 하였다.
- 5대 암종(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는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08년 11월 기준)으로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08년 기준이었던 지역가입자 67,800원 이하, 직장가입자 56,500원 이하에서 '09년 72,000원 이하, 60,000원 이하인자로 각각 변경하고,
 - ※ '09년 실인원 8,069천명(암종별 전체 건수는 16,710천건: 붙임1 참조)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암종별 미수검자는 다시 대상자에 포함해 수검기회를 제공한다.
 - 특히, 그간 주소지 및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되어 추가등록 신청절차를 통해서만 지원되었던 일부 대상자 및 기관 종사자가 당초에 추가될 예정이다.
 - ※ 주소지 부재 외국인(사업장으로 통보): 66,502명, 육·해·공군 종사자(개별통보): 35,156명, 향운노조 등 특수사업장(개별통보): 3,662명
-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 이외에
 - 암검진기관 행정업무 절차의 효율화를 위해 암검진 판정결과가 “정상”이 아닌 경우 검진결과를 해당 보건소에도 동시에 통보하도록 했던 것을 폐지하고 정보시스템 통해 확인토록 변경하고,
 -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문진표, 결과통보서, 비용청구서류 등 암검진 관련서식을 건강검진과 통합(건강검진실시기준, '09.1.19. 시행) 운영토록 하였다.
- 2009년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암검진대상자' 안내문은 '09. 2. 10일부터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완화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소한의 주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는 기본재산액 공제, 이른바 '주거공제' 개념을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도입한다.
- 그동안 다른 소득·재산은 전혀 없고 평생 모은 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 한 채만 있을 뿐인

데도 아파트 가격(시가표준액 기준)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상당수 노인들이 올해 1월부터 새롭게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엔 신규로 도입하는 주거공제 범위는 지역별로 최소 주거 유지 비용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도시 10,8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해당 범위내의 금액은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고 제외하게 된다.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 이 밖에도 노인단독가구 720만원, 노인부부가구 1,200만원까지는 최소한의 생활준비금 성격의 긴급자금으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해 오던 것을 금년 1월부터는 가구 구분(노인단독, 노인부부) 없이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 이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자녀의 결혼자금 지원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본인의 장제 준비를 위한 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적인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같은 변경 조치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적용되는 만큼, 아직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1월 중으로 가까운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신청하셨거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음
-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청·접수 상황을 잠정 집계한 결과 총 360여만명이 신청을 완료하여 그 중 318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 이번 주거공제 조치 등을 통해 약 21만명 정도가 추가로 수급할 수 있게 되어 금년 1월말 예상 총 수급자는 33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 또한, 주거공제 신규 도입 등에 따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 2월 이후에는 수급자가 이보다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치매선별검사 확대 실시

-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치매선별검사가 확대되고 심·뇌혈관 질환이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는 기존 66세 외에 70세와 74세 노인에 대해서도 치매선별검사가 실시되고,

- 일반 건강검진의 주요 목표 질환이 '심·뇌혈관질환'으로 설정되어 1차 검진부터 심·뇌혈관질환을 집중 검진하는 한편, 2차로 의사의 사후 상담을 추가하여 고혈압·당뇨병 질환의 심자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09년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확정해 1월 19일자로 고시하고, 올해 건강검진대상자에게 안내문과 검진표를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간다.
- 이에 따라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일반건강검진 1,628만명, 암검진 1,442만명(국가암조기검진 포함),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29만명, 영유아건강검진 235만명 등이다.
- 이번 국가건강검진 제도 개편의 목적은,
 - 가속화되는 인구 노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매예방을 강화하고,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사전 발견 및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건강검진 본래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심·뇌혈관 질환은 지속적인 의료비 부담, 간병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크나, 적절한 발견을 통해 사전예방이 가능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 ※ 고혈압, 당뇨병 관련 진료비: 5,735억원('95) → 4조 9,559억원('05) 8배 증가
 - ※ 유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심·뇌혈관 질환 5.39조, 암 5.53조
 - ※ 예방가능성(WHO): 심·뇌혈관 질환 80%, 암 40%
-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민원마당/건강검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대상자조회)를 확인하거나 전화(☎ 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 건강검진은 전국 모든 검진기관에서 연중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마당/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를 통해 검진기관은 물론 검진예약률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발송 받은 건강검진표를 분실한 경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1577-1000)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 ■ ■ 국민연금 사업장 소득신고 손 쉬워져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국민연금 사업장의 소득신고 부담을 덜어 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안을 2009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령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 소득신고시 국민연금공단 신고 생략
 -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에는 따로 공단에 신고하지 않도록 사용자 신고의무 완화
 - 기준소득월액의 적용 기간 단일화
 - 사업장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기간을 개인 사업장 사용자와 같게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변경
-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신고 업무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입법예고('09.1.15~2.4) 기간 동안 관심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보건복지가족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 입법예고

-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근거법률이 마련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바우처 발급 및 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안을 마련하고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이번 제정안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관리를 별도의 법률을 통해 구체적으로 조문화시킨 것으로, 특히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사회서비스바우처 관리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사회서비스바우처의 유형, 수량, 형태 및 지급대상, 자격기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공표하여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함.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바우처의 지급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발급 여부를 결정하면 사회서비스바우처 담당기관이 이를 발급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바우처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사업자는 사용자의 원활한 선택을 위하여 사회서비스의 내용, 시설, 인력 등을 공개하도록 함.
 - 사업자는 사회서비스 제공거부 금지, 바우처 사용자 본인 확인, 사용자에게 바우처수수료 전가 금지, 기타 사회서비스바우처 부정사용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

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함.

- 보건복지가족부장은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발급 및 비용 지불·정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 사회서비스제공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서비스바우처의 부정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은 연 2,000억원 규모지만, 향후 보육바우처 등까지 확대되면 1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번 법 제정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 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 심의(3월), 법제처 심사(4월) 등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올해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국회 통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 동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중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75, 참조: 사회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정책과(전화 02-2023-8412, 팩스 02-2023-8402)로 문의하면 된다.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기간 합쳐서 연금받는다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별 연금의 재직기간을 연계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만을 받아야 했다.
- 우리나라 공무원퇴직자 중 66%, 군인 15%, 사학 교직원 12%만이 퇴직시 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60세가 되어서 연금을 받는 비율은 50% 내외로, 연금제도간 이동으로 인해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연계제도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지난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

률」안을 마련하여 공청회(9월)를 거친 후 국회에 제출(11월)하였다.

- 이 법이 이번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직업 이동으로 인해 연금을 받지 못하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 직역 간 노동이동이 활발해져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후설계, 국민연금과 상담하세요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박해춘, www.nps.or.kr)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으로 공단의 업무에 노후설계서비스(CSA)가 추가됨에 따라 앞으로 노후설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 * 공단의 주요업무로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지원 활동이 추가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월 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공단은 노후설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위해 2003년부터 노후설계서비스(CSA)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사업모형 개발, 노후설계 전문인력 양성, 노후종합포털 개발, 사회자원 활용 인프라 구축 등 체계적 준비를 해왔으며, 2008년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8년 12월 말까지 108천여명의 고객에게 노후설계서비스(CSA)를 제공하였다.
- 노후설계서비스(CSA)는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30대~50대 고객을 주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보장상담과 50대 이후 고객을 주대상으로 하는 노후생활상담으로 나누어진다.
- 노후소득보장상담은 고객의 재무영역에 있어서의 노후준비 정도를 분석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등을 통해 부족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필요 고객에게 일자리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기여하고,
- 노후생활상담은 고객의 비재무영역(건강, 대인관계, 주거, 취미·여가)에 대한 노후준비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을 연결해 줌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도움을 제공한다.
- 노후소득보장이 공적연금을 기본으로 한 다층보장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들도 이미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과 상담, 정보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의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다.
- 향후 공단은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연계한 종합적인 연금안 내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다층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돕고, 노후준비 관련 종합적인 정보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종합적

인 노후설계 전문기관으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훈리 재활치료 서비스 본격 실시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올해 1월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전국 1만 8천명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와 현재 장애아동수당 수령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 ※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50,090원, 지역가입자는 48,090원 이하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633천원	17,270	8,320	17,780
2인	1,182천원	30,070	20,390	30,480
3인	1,688천원	43,180	38,710	44,020
4인	1,956천원	50,090	48,090	50,800
5인	2,019천원	51,530	51,150	52,830
6인	2,135천원	55,190	56,210	56,160
7인	2,250천원	57,570	59,560	58,740
8인	2,366천원	60,180	62,720	61,360

-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제외)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생계비 120% 이하) 2만원, 차상위초과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4만원
- 이용희망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2월부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월 1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 ※ 매달 중순까지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서비스 제공
- 현재 각 시·군·구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바우처 단말기 구입, 가맹점 가입 등의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